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5.7.24. 공포, 2016.7.2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행사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절차 등을 규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14.7월)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3.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 나.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에 따라(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명확히 함 (안 제32조)
- 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안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8)

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 변경 (안 제48조의2, 제5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0. 00. ~ 00. 00.) 예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5명”을 “10명”으로 하고,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은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권고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단의 기한 내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제도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법령안을 포함한다)
2.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법제처장에게 권고 내용이 반영된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등 권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평가결과 등의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작성하여 그 3년이”를 “그 3년이”로 하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행정자치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의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보호위원회는 기본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며, 제13조제3항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제32조제2항제2호제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로 정하는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추가로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추가로 지정·지정취소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이하 "인증 심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부여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 심사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원 자격을 취득 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

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유지·취소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준 등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
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
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5(인증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인증의 사후 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신청할 때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인증 수수료”)을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을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2항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서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나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당연직 위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사무국 등”을 “사무기구 등”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기존 제2항)의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를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로 하며, 제1항, 제2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1명은 상근전문위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전문위원의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서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600	1200	24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2016년7월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문위원회) ① (생략)	제5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 ----- ----- <u>10명</u>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은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권고의 이행이 곤란한 경</u>

<신 설>

우에는 전단의 기한 내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제도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법령안을 포함한다)
2.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변경에

다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관리
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
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
고 받은 경우 법제처장에게 권
고 내용이 반영된 법령안의 심
사를 요청하는 등 권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
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
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
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
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
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
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

의 대상·기준·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
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
에 필요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
와 평가결과 등의 기록·관리업
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
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

----- 그 3년이 시작되
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
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
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
와 방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보

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
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1. ~ 5.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본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② 보호위원회는-----

③ 법 제11조제3항에-----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사람

<신 설>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로 정하는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추가로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추가로 지정·지정취소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신 설>

합격한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이하 “인증 심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부여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 심사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의 자격 부여·유지·취소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준 등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

<신 설>

<신 설>

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5(인증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인증의 사후 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4제6항

<신 설>

<신 설>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생 략)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

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기관은 개인정
보 보호 인증을 신청할 때에 개
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
되는 비용(이하“인증 수수료”)을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인
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
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
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

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 4. (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
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
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
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
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
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
축·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
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
보 침해의 가능성

2. ~ 4. (현행과 같음)

② -----

-----제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제
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35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
기 전에 그 영향평가를 행정

③ (생략)

<신설>

제50조(사무국 등)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2항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서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나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③항과 같음)

제48조의2(당연직 위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50조(사무기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1명은 상근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전문위원의

② <u>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행정 자치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u> <u><신 설></u>	<u>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u> ③ <u>-----다른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u> ④ <u>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2-2100-4106